2025년도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차 추경 예산 총칙

(2025.01.01. ~ 2025.12.31)

제1조(총칙)

①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서를 편성 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및 관할 시·구청에 보고한다.

②재원에 따라 보호작업장 예산서를 작성한다.

③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 총액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세입				세출			
구분	2025년도 1차 추경 예산(A)	2025년도 2차 추경 예산(B)	증,▲감 (B-A)	구분	2025년도 1차 추경 예산(A)	2025년도 2차 추경 예산(B)	증,▲감 (B-A)
총액	802,257	868,442	66,185	**총액**	802,257	868,442	66,185
사업수입	154,800	150,000	▲4,800	사무비	485,278	500,001	14,723
보조금수입	469,630	478,875	9,245	재산조성비	36,530	100,468	63,938
후원금수입	720	36,510	35,790	사업비	268,288	255,363	▲12,925
전입금수입	104,000	129,000	25,000	잡지출	500	500	0
전년도이월금	51,917	51,917	0	예비비	11,661	12,110	449
잡수입	21,190	22,140	950				

④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서 전체 총액은 868,442천원,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서 전체 총액은 802,257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66,185천원(약8.2%)증가하였다.

⑤ **[기타 보고 사항]** 표고버섯 배양동 재배사 변경 작업으로 인한 비용 지출 건

(1) 총공사 비용 : 7,500천원

(2) 상대 계정 : 표고버섯 사업수입 4,500천원, 고용장려금 3,000천원으로 지출 예정.

⑥ 세입내역을 살펴보면,

(1) 사업수입 150,000천원, 보조금수입 478,875천원, 후원금수입 36,510천원, 전입금 수입 129,000천원,

전년도이월금 51,917천원, 잡수입 22,140천원이다.

(2) 세입 주요 증감 원인은

가) 사업수입 4,800천원(3.1%)감소
- 임가공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수입 감소분 반영

나) 보조금 수입 9,245천원(2.0%)증가
- 외부사업(경기복지재단 환경개선사업/G마크 경쟁력 제고사업)선정에 따른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수입 증가분 반영

다) 후원금 수입 35,790천원(4970.8%)증가
-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특수차량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지정후원금 증가분 반영

라) 전입금 수입 25,000천원(24.0%)증가
- 고용장려금 확정에 따른 전입금 증가분 반영

마) 잡수입 950천원(4.5%) 증가
- 부가세 환급금 변동에 따른 잡수입 증가분 반영

⑥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

1) 사무비 500,001천원, 재산조성비 100,468천원, 사업비 255,363천원, 잡지출 500천원, 예비비 12,110천원이다.

2) 세출 주요 증감 원인은

가) 사무비 14,723천원(3.0%)증가
- 종사자 가족수당 및 연차수당 증가분 반영
- 특수차량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차량비 증가분 반영
- 종사자 직무 개발 관련 교육비 상승분 반영

나) 재산조성비 63,938천원(175.0%)증가
- 공동모금회 특수차량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분 반영
- 경기복지재단 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분 반영
- 전년도 대비 시설 보수건 증가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분 반영

다) 사업비 12,925천원(4.8%)감소

- 직업재활프로그램 中 사회재활 프로그램 비용 감소에 따른 직업재활사업비 감소분 반영
- 표고버섯생산사업비 조정 및 선물세트 박스 미제작에 따른 생산사업비 감소분 반영
- 재가장애인 사회보험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보호작업사업비 감소분 반영

제2조(내역) 세입•세출의 세부명세는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서와 같다.

제3조(집행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금등의 사용목적에 부합될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” 제16조(예산의전용) 항목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기타) 본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”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